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3
------	------

제출일자 : 2023. 05. 3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 마. 회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및 제8조)
- 바. 간사 및 회의록 (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수당 등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04. 26. ~ 2023. 05. 16.): 별도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2.·3. (생략) 4. <u>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제3조(구성) ①<u>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생략)</p> <p>③<u>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u></p>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신 설>

2. (생 략)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
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새로 위촉
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
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삭 제>

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
-----.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
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
다.

② (생 략)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
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
③ -----
----- 개회하고, -----

--.
④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신 설>

② (생략)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락처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9.>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05.5.24, 2011.08.12>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